

『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7월 3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7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7월 15일

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이 관 응

나. 제안이유

- 건축한지 40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구미소방서를 신축하여 소방관의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관의 훈련장 및 시민 소방안전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2019. 3월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을 의결받았음.
- 이에, 건축주인 경상북도가 구미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도록 구미소방서 신축부지(시유지)에 영구시설물 축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대상토지 : 구미시 공단동 206, 209-1번지(대지, 8,429m²)
- 건축주 : 경상북도
- 건축현황
 - 구미소방서 : 지하1층, 지상3층(1동) / 연면적 5,196m²
 - 다목적훈련탑 : 지상5층(1동) / 연면적 264m²(소방안전교육장 포함)
- 건축비 : 129억원(도비)
- 건축기간 : 2020년 ~ 2022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,
같은 법 시행령 제9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경 자

○ 본 『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』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 단서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노후화된 구미소방서 신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부지매입을 의결한 바 있으며,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과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매입한 토지 위에 경상북도가 구미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